전통과 현대, 낭만과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시립미술관(구 경성재판소, 대법원)

글 · **이창언** satyagraha21@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통하는 길은 전통, 현대, 자연이 공존하는 최고의 산책로이자 낭만과 문화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 덕수궁을 비롯해 (구)러시아공사관, 중명전,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 탐방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각종 국내외 블로그와 카페에는 서울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명소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또 다른 매력은 관람료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유명작가의 전시부터 마니아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유쾌한 작품들이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전시된다. 최근 가정의 달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맞추어 미술관 주변을 전시공간으로 확장하여 개최되는 〈2009 미술관 봄나들이_미술관 습격사건展〉도 그런 전시 중 하나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재판소 건물이었다. 당시 이 공간에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구금, 학살되었다. 해방 후에 대법원 건물로 사용되면서 특정한 시기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옛 법원 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성 재판소 부지의 유래는 1886년 국립 육영공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895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들어섰다. 평리원은 공평동 부근에 신축건물을 세워 이전하였고, 옛 평리원 건물은 조선총독부 조사국 분실로 사용되어왔다. 그 후 1926년 총독부는 정동 옛 평리원 부지에 이른바 경성3재판소를 세우기로 하고 대지 4,680평을 확보하였다. 경성재판소는 일본인이 설계하여 1927년 착공되었고, 1928년 11월 9일 준공 후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번원이 들어섰고, 해방 후에는 대법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성재판소는 건축 당시 평면은 일(日)자형을 채택하였다. 입면에는 근대 고딕식 수법을 사용하였다.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에 화강석과 화장타일을 붙여 마감한 이 재판소 건물은 도청사 등 관공서의 전형이 되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처럼 해방 후 경성재판소는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89년 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청별관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종합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현상설계를 거쳐 지난 2002년 5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개 · 보수되어 사용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길은 연인끼리는 함께 가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통하는 길은 전통, 현대, 자연이 공존하는 최고의 산책로이자 낭만과 문화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 덕수궁을 비롯해 (구)러시아공사관, 중명전,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 탐방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각종 국내외 블로그와 카페에는 서울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명소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는 안 될 장소로 손꼽힌다. 그곳에 가면 십중팔구 헤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연유를 "경성재판소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됐다는 것과 배재학교 이화학생들이 정동입구로 나란히 들어가다가 정동교회 앞에서 헤어지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려주면 다들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이 예전엔 재판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십중팔구, 깜짝 놀란다. " 어떻게 이리도 멋진 공간이 흉악범을 심판하는 재판소였냐!"는 것이다. 한국의 미술관도 결코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지만 재판소와 미술관은 너무나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도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실용주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 재판소는 흉악범을 심판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단순함, 맥락과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우리시대가 너무 각박하게 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르네 마그리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건물의 사회적 의미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벨기에의 유명한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와 사과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와 사과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단지 파이프와 사과의 이미지일"뿐이다.

여기에 우리의 난감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 이미지에서 그 안의 본질을 깨닫는 것, 아이콘이라는 현대의 기호에서 그것이 그 안의 것을 그저 쉽게 이해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유행위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물(건물)에 대해서도 호명되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담겨 있는 역사와 의미, 상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건물은 물리적 의미와 역사, 사회적 의미를 내장하고 있다. 건축물의 역사는 당대의 역사와 지배층의 욕망을 투영한다. 지배층에게 건축물은 권위와 상징을 통해 민중의 체제 순응을 내면화시키는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울시청으로 사용되었던 경성부청사를 비롯하여 본정경찰서(옛 중부경찰서, 1924년), 경성재판소 등이 바로 그러하다. 중앙에 높고 큰 돔을 올리고 정면에 열주를 세우는 등 극히 권위주의적이고 상징적인 건물로,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열강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앞다투어 지은 전형적인 식민지 풍의 건물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준공 당시 도로보다 21척이 높은 서울시립미술관(구 경성재판소, 구 대법원)은 고단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어 은연중 권위를 통한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서초동으로 대법원이 이전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길은 연인끼리는 함께 가서는 안 될 장소로 손꼽힌다. 그곳에 가면 십중팔구 헤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연유를 "경성재판소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됐다는 것과 배재학교 이화학생들이 정동입구로 나란히 들어가다가 정동교회 앞에서 헤어지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려주면 다들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고조 될수록 더 크고, 더 초현대식 외양으로 대중을 압도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말깨나 하는 놈 가막소(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징용간다"라는 민요가 있다. 여기서 '말깨나 하는 놈'은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나 공산주의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을 무단 점령한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감시하고 탄압해 나갔다. 이 법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에서 출발하여 1925년 4월 12일 공포되어 5월 12일 시행되었다고 한다. 칙령은 조선,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는데 보통선거법과 거의 동시에 제정되었다. 일제가 이 법을 제정한 의도는 보통선거 시행에 따른 정치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그에 힘을 받은 반제민족해방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법의 첫 적용은 조선공산당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에 적극 활용되었다. 이후 치안유지법은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고,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3년에는 더욱 새롭고 강화된 치안유지법에 따라 처벌 강도도 강화되었고 더 개악되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일제말기에 이 법은 민족주의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경성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일제가 만든 법과 재판을 거부하는 투쟁도 적지 않았다. 1920년대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김철수 같은 이는 치안유지법 최고형인 10년형을 선고받고, 변호사들의 요청을 거부한 채 항소를 거절하기도 한다. 자신은 "포로일 뿐 일본의 법률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64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인민혁명당사건 연루자들이 법정에서 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경향신문

1945년 해방이후에도 말깨나 하는 놈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이 1948년 제정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따랐는데,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모두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사상의 자유와 민주화운동을 탄

압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울시립미술관(구 대법원)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탄압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나서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 '사법살인'으로 불리 우는 '인혁당 재건위'사건 등이 있다.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한 바 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이 재판을 재판놀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 소식을 필자는 일본에서 듣게 되었다.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까지 분향 물결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일본 측 NGO 회원들과 유학생들도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에서는 노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검찰과 사법부에 분노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회가 민주화되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권력의 시녀라는 딱지를 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실용정부의 사법부에게 인혁당 재건위 재판부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극적 아포리즘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지강헌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 법조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법조비리와 한국 사법부의 권력지향적 속성을 "일제 때 판검사를 지내며 적극적으로 친일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 뒤 법조계의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권력의 편에 서 있었으며, 그러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듯하다. 슬프지만 이러한 지적은 결코 과장이라 할 수 없다.

일례로 한국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민복기 씨는 일제강점기 경성

지난달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덕수궁 길가의 시민들

지법 판사였다.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제 5~6대 대법원장을 지냈으며,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빼고는 1978년까지 사법부의 수장은 친일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외형과 망각을 넘어 의미와 기억으로

포스트모던이 풍미하는 이 시대에도 역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과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용함 외에도 과거의 불행을 되새겨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공간이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지배담론을 생산하는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삶으로 생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경성재판소, 대법원이 서울시민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탈바꿈했지만 당대의 아픔과 대결하면서 고독하게 싸웠던 사람들의 정신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조희연 교수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대의 아픔에 대결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전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나태해 질 때 역사는 다시 반복되거나 회귀할 수밖에 없다.

글 **이창언** | 현재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며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다.